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6호 2020. 7. 16.(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56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95호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4
- 사천시 공고 제899호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변경] 공고 -----27
- 사천시 공고 제911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28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887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9
- 사천시 공고 제906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 사천시 공고 제917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45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

##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218호(2020. 06. 25.)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7. 16.

## 사 천 시 장

###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나. 면 적 : 68,661m<sup>2</sup>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6. 7. 28. ~ 2020. 12. 31.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폐수 발생시설 제외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661	-	68,661	100.0	-
산업시설용지	44,273	감) 470	43,803	63.8	-
공공시설용지	22,835	증) 470	23,305	33.9	-
도 로	12,448	감) 1,298	11,150	16.2	1개소
	1,247	증) 368	1,615	2.4	1개소
	1,456	증) 19	1,475	2.1	1개소
	351	감) 281	70	0.1	1개소
	7,333	증) 1,662	8,995	13.1	1개소
기타시설용지	1,553	-	1,553	2.3	
녹 지	1,553	-	1,553	2.3	1개소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1) 도로계획

##### ○ 총괄표(기정)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소로	-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산35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247	증) 368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3)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684	증)1,381	9,065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증)1,662	8,99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351	감)281	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 676호

## 4) 공원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증)19	1,47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 용수량

구 분	용 수 수 요 량 (㎡/일)	비 고
계	153	·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활용수	21	
공업용수	132	

##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 오수량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계	134	·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공 업 오 수	119	
생 활 오 수	15	

##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 전 력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변압기 최대부하(kW)	비 고
계	3,020	818	한국전력공사 협의
산업시설용지	2,966	17	
기타 시설용지	54	835	

# 사 천 시 공 보

제 676호

## ○ 연료공급계획

구 분	직접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비고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천Nm <sup>3</sup> /년	toe/년		천Nm <sup>3</sup> /년	toe/년	
산업시설용지	1,265	121	127	2,055	192	201	
합 계	1,265	121	127	2,055	192	201	

##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소요회선(회선)	비고
여유율 20% 감안	23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계	19	
산업시설용지	19	

## 10)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발생량(kg/일)	비고
계	55,138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폐기물	30,660	
사업장 지정폐기물	24,478	

##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sup>주1)</sup>	기타비용 <sup>주2)</sup>
총 사업비	27,400	23,600	1,100	1,200	1,500

주1) 감리비 : 공사비, 설계비의 6%

주2) 기타비용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5%

# 사 천 시 공 보

제 676 호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비고
계		27,400	2,100	6,900	11,000	7,400	-
공사비		23,600	1,000	5,700	11,000	5,900	-
설계비	설계비	1,100	1,100	-	-	-	-
	감리비	1,200	-	1,200	-	-	-
기타비용		1,500	-	-	-	1,5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해당없음

11. 에너지 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업종배치계획(기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면적(m <sup>2</sup> )	비 율(%)
계		44,273	100.0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1,116	25.1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7,672	40.0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6,445	14.5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9,070	20.4

※ 입주예정기업 : 해원조선소, 제일조선소, 삼성조선소

# 사 천 시 공 보

제 676호

## ○ 업종배치계획(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면적(m <sup>2</sup> )	비 율(%)
계		43,803	100.0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8,155	18.6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9,143	20.9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0,894	24.9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5,112	11.7
산업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6,815	15.5
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3,684	8.4

※ 입주예정기업 : 제일조선소, 삼성조선소, 에이치케이조선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68,661	68,661	100.0	-	
처분대상 용지	소 계	44,273	43,803	63.8	-
	산업시설용지	44,273	43,803	63.8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4,388	24,858	36.2	
	도 로	12,448	11,150	16.2	사천시 무상귀속
	주 차 장	1,247	1,615	2.4	"
	공 원	1,456	1,475	2.1	"
	완 충 녹 지	351	70	0.1	"
	경 관 녹 지	7,333	8,995	13.1	"
녹 지	1,553	1,553	2.3	"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 676 호

##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2,485,548.5 (54,167,097.0)	- -	452,485,548.5 (54,167,097.0)	100.0		
도 시 지 역	계	92,916,327.5 (2,572,383.0)	- -	92,916,327.5 (2,572,383.0)	20.5		
	주거	소 계	11,755,935.9 (4,272.0)	-	11,755,935.9 (4,272.0)	2.6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300,794.0	-	300,794.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405,674.0	-	6,405,674.0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4,446,113.0	-	4,446,113.0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9,954.5	-	179,954.5	0.0	
		준주거지역	423,400.4 (4,272.0)	-	423,400.4 (4,272.0)	0.1	
	상업	소 계	1,306,562.6 (18,841.0)	-	1,306,562.6 (18,841.0)	0.3	
	지역	일반상업지역	1,172,537.6 (18,841.0)	-	1,172,537.6 (18,841.0)	0.3	
		근린상업지역	134,025.0	-	134,025.0	0.0	
		공업	소 계	11,060,986.0 (957,772.0)	감)286 감)286	11,060,700.0 (957,486.0)	2.4
	지역	일반공업지역	10,175,721.0 (921,690.0)	감)286 감)286	10,175,435.0 (921,404.0)	2.2	
		준공업지역	885,265.0 (36,082.0)	-	885,265.0 (36,082.0)	0.2	
		녹지	소 계	67,274,624.0 (78,859.0)	증)286 증)286	67,274,910.0 (79,145.0)	15.0
	지역	보전녹지지역	3,880,300.0	-	3,880,300.0	0.9	
		생산녹지지역	7,039,820.0	-	7,039,820.0	1.6	
자연녹지지역		56,354,504.0 (78,859.0)	증)286 증)286	56,354,790.0 (79,145.0)	12.4		
미 지정		1,518,219.0 (1,512,639.0)	-	1,518,219.0 (1,512,639.0)	0.3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도 시 지 역	계		359,569,221.0 (51,594,714.0)	- -	359,569,221.0 (51,594,714.0)	79.5
	관 리 지 역	소 계	126,396,335.1	-	126,396,335.1	28.0
		보전관리지역	47,854,261.3	-	47,854,261.3	10.5
		생산관리지역	35,905,807.6	-	35,905,807.6	8.1
		계획관리지역	42,636,266.2	-	42,636,266.2	9.4
	농 립 지 역		167,945,909.9	-	167,945,909.9	37.1
자연환경보전지역		65,226,976.0 (51,594,714.0)	- -	65,226,976.0 (51,594,714.0)	14.4	

※ 기정 :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0-28호, 2020.01.23)

※( ) : 해면부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 시 지 역	일반공업지역	68,661	감) 286	68,375	100	
	자연녹지지역	-	증) 286	286	-	

※ 기존 일반공업지역 286㎡ 추가 편입으로 전체 면적 68,661㎡은 변동 없음.

##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사천 -1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자연녹지 지역	일반공업 지역	51	350% 이하	•향촌2 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따른 자투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
사천 -2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일반공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337	80% 이하	•향촌2 일반산업단지 구역에서 제척 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 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

#### ○ 총괄표(기정)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 ○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소로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산35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A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6	중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폭 축소 및 노선연장</li> <li>- 연장 : 775m→793m</li> <li>- 폭원 : 15~18m→14m</li> </ul>	현황여건에 따라 도로폭원을 축소하고 산업시설용지 분할에 따른 노선연장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247	증)368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증가</li> <li>- A = 1,247→1,6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입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2) 공간시설

###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684	증)1,381	9,065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증)1,662	8,99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351	감)281	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경관녹지	· 면적증가 - A = 7,333→8,995㎡	·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19	완충녹지	· 면적감소 - A = 351→70㎡	· 현황여건 및 지형여건에 맞도록 완충녹지 축소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증)19	1,47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소공원	· 면적증가 - A = 1,456→1,475㎡	·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향촌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8,661	-	68,661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구역증감 (면적변경 없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6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구역 증감 - 면적변경 없음	현황여건에 따라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구역 증감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661	-	68,661	100.0	-	
산업시설용지	44,273	감) 470	43,803	63.8	-	
공공시설용지	22,835	증) 470	23,305	33.9	-	
	도 로	12,448	감) 1,298	11,150	16.2	1개소
	주 차 장	1,247	증) 368	1,615	2.4	1개소
	공 원	1,456	증) 19	1,475	2.1	1개소
	완 충 녹 지	351	감) 281	70	0.1	1개소
	경 관 녹 지	7,333	증) 1,662	8,995	13.1	1개소
기타시설용지	1,553	-	1,553	2.3		
녹 지	1,553	-	1,553	2.3	1개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7 - I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44,273			44,273	
산업	산업1	44,273	1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1,116	
			2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7,642	
			3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445	
			4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070	

# 사 천 시 공 보

제 676호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3,803			43,803	
산업	산업1	43,803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155	
			2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143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0,894	
			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112	
			5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6,815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684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15			1,247	증)368	1,615	
주	주1	1,615	-	사등동 산35 일원	1,247	증)368	1,615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 1-1~ 산업 1-6	산업 1-1~ 산업 1-6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li> <li>·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li> <li>· 강조색 ( 제한없음 )</li> </ul>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li> <li>-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사업
- 2) 명 칭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A=22,835㎡, 변경 A=23,305㎡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당초: 중로2-26호선	L=775m, B=15~18m, A=12,448㎡	
	변경: 중로 3-24호선	L=793m, B=14m, A=11,150㎡	
주 차 장	주차장 22	당초: A=1,247㎡	
		변경: A=1,615㎡	
공 원	소공원 3	당초: A=1,456㎡	
		변경: A=1,475㎡	
녹 지	경관녹지 2	당초: A=7,333㎡	
		변경: A=8,995㎡	
	완충녹지 19	당초: A=351㎡	
		변경: A=7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사천시장
-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li> </ul>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250%이하	-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없음

##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 제1조(주차장의 설치)

- ①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조(소공원의 설치)

-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4장 기타사항

###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 제2조(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895호

##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방법 다양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투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반영
-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2. 예산편성 방향

- 주민의견 적극 수렴으로 재정 투명성 및 효율화 달성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역점시책,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등 중점 편성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3. 주민참여예산 범위

- 시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 정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 4.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추진계획

### ①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 실시

- 기 간 : 2020. 7. 13. ~ 8. 7.(26일간)
- 대 상 : 주민, 단체
- 방 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및 서면
  - 사천시 홈페이지 '2021년도 사천시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
- 내 용
  -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현안사업 투자 방향 설문참여
  -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서 제출
- 접수(배부)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055)831-2223, 예산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주민센터)

###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 10월 중
- 주요내용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③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접수  
(홈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 련한 다양한 의견 접수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 사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2021. 1월 중 공개

## 6.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055-831-2223)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변경)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 - 89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대표자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소하천명		신소소하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구평리 일원		
	면적	10,33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07.02 ~ 2021.12.20		
	목적 및 사유	교량형식 변경신청에 따른 변경허가 당초 : 합성형 라멘교 변경 : 3연 암거박스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91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농업회사법인 (주)하늘팜		
	대표자 (성 명)	김영호	주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15
소하천명		어류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15-4번지		
	면적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사유	단순점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공고 제2020- 887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증액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액 증액(안 제9조 관련 별표)

- 경영안정자금 3억원 → 5억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056, 팩스번호: 055)831-6044]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현 행>

[별 표] <개정 11.6.1, 2019.3.11.>

##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9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8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9명 이상 15명까지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6명 이상 30명까지 또는 매출액 8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경영안전자금	<u>100백만원</u>	<u>150백만원</u>	<u>225백만원</u>	<u>300백만원</u>
기술개발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개 정 안>

[별 표]

##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9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8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9명 이상 15명까지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6명 이상 30명까지 또는 매출액 8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경영안전자금	<u>100백만원</u>	<u>200백만원</u>	<u>350백만원</u>	<u>500백만원</u>
기술개발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관 련 법 규

###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법제 및 재정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공고 제2020-906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규정을 완화하고, 경상남도 관련 조례와 지원대상을 일치시켜 본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및 의사의 진단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3조)
- 증빙서류 검토 규정 삭제(안 제5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 831-6023)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제2항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p>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p> <p>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p> <p>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p> <p>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p> <p>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p>
<p>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신청서----- -----.</p>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u>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서 1부</u> ※ <u>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u>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연락처	주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u>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서 1부</u>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관 련 법 규

### □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공고 제2020-917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심사 및 의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 676호

##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 831-6023)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 이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 1. 시설급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b>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b>	<b>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b>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gt;</p> <p><b>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b>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li>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li> </ul> </div>	50점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li> <li>·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li> <li>·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li> </ul> </div>	
<b>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b>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b>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고충처리계획, 급식제공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b>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적 시설운영 가능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서류 확인)	4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마련 여부	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b>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시설안전 계획 및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b>지자체별 심사 기준</b>	
	<input type="checkbox"/> 시설안전계획(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이 적정 수립 및 CCTV설치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b>합 계</b>		<b>100점</b>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b>80점 이상</b> 이어야 함		

2.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b>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b>	<b>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b>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gt;</p> <p>① <b>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li> </ul> <p style="font-size: small;">※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b>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li> <li>·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li> </ul> </div>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li> <li>·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li> <li>·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li> </ul> </div>	50점
<b>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b>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p>	5점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p>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b>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b>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b>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b>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b>지자체별 심사 기준</b>	
	<input type="checkbox"/>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5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5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b>합 계</b>		<b>100점</b>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b>80점 이상</b> 이어야 함		

### 3. 복지용구제공시설

항목	세부 기준	배점
<b>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b> (50점)	<b>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gt;</p> <p>①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li> <li>·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div> <p>□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li> <li>·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li> <li>·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li> </ul> </div> </div>	50점
<b>장기요양기 관의 운영계획</b> (30점)	<b>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b>	
	<p>□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p> <p>□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p>	15점 15점
<b>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20점)</b>	<b>지자체별 심사 기준</b>	
	<p>□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p> <p>□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p>	10점 10점
<b>합 계</b>		<b>100점</b>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b>80점 이상</b> 이어야 함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 관 련 법 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 사 천 시 공 보

제676호

류를 같음한다)

###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